

광주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2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

피 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일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9. 체결된 신탁계약을 30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2021. 3.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주위적 청구인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신탁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406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31. 'D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E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채권 13억 원에 관하여 2017. 10.경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D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9. 6. 2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선고 및 확정

E의 다른 채권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147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D는 G에게 1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9. 5. 9.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은 2019. 6. 1.

확정되었다.

다. D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 1) D는 2017. 4. 3.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D는 2019.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5. 9. 접수 제797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I조합의 채권최고액 22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자 J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 3)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고, D는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아래 공동1순위 수익자들로부터 총 20억 2,150만 원(= K조합 7억 원 + L조합 6억 6,075만 원 + M조합 6억 6,075만 원)을 대출받았다.

순위	법인명 또는 성명	수익권증서 발급금액(원)
공동1순위	K조합	700,000,000원
	L조합	660,750,000원
	M조합	660,750,000원

2순위	J	1,200,000,00원
	주식회사 N	220,000,000원
	주식회사 O	250,000,000원
	주식회사 P	150,000,000원
합계		2,761,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D는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 선고 당일인 2015. 5. 9.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1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는 2019. 5. 9. 위탁자 D와 공모하거나 위탁자를 교사·방조하여 사해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탁자 D와 공모하여 2019. 11. 29. 이 사건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Q로 변경지정하여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해신탁 계약의 유지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6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D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I조합의 기존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한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D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 3)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탁자에 해당하고, 금융기관인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 또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 4)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 범위는 피고가 취득한 신탁보수금 1,000만 원에 한정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판단

G가 D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사건의 판결이 2019. 5. 9. 선고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9. 5. 9.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2019. 5. 31. 선고되어 2019. 6.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판결이 2019. 5. 31. 선고되어 2019. 6. 25.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D의 사해행위

1) D의 무자력

가) 적극재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체결 당시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390,622,800원 및 R은행 예금채권 826,905원 합계 3,391,449,705원(=3,390,622,800원 + 826,905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나) 소극재산

갑 제2, 7,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D는 ① 근저당권자 I조합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1,664,522,633원, ② G에 대한 판결금 채무 1,300,000,000원, ③ 이 사건 판결금 채무 300,000,000원, ④ 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50,000,000원, ⑤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20,000,000원, ⑥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50,000,000원을 부담하고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D는 합계 3,884,522,633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는 원고가 J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J는 D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근저당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 3,884,522,633원이 적극재산 3,391,449,702원을 초과하므로 D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고,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날 D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는 이 사건 관련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D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발급받은 수익권을 담보로 20억 2,150만 원의 대출을 받아 I조합에 대한 1,645,632,336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 인해 그 차액인 375,867,664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당시까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였던 N, O, P 등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③ D는 자금난을 타개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된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졌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탁법 제8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며(제1항),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선의이면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5항).

2) 위 규정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탁자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더라도 선의이면 수탁자와 선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의의 수익자가 이미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 또는 수익권의 급부를 받은 때에는 신탁계약 취소 및 받은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급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취소와 수익권양도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K조합, L조합, M조합은 금융기관으로 D와 별다른 연고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증서의 발급금액은 총 2,761,500,000원으로 위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여, 각 내부 대출심의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통한 대출금 회수에필요한 정도를 넘어 D와 원고, A 사이의 소송 진행 사실이나 D의 세부적인 재산상태,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다액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D로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모든 채무내역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자들의 압류, 보전처분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K조합, L조합, M조합은 우선수익권을 취득할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중 적어도 K조합, L조합, M조합은 선의라고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신탁법 제8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을 교사·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해신탁 계약의 유지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 신탁법 제8조 제6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차유나 판사 오정민

별지

목록

1. 광주 북구 S 대 1446㎡

[도로명주소]

광주 북구 T

2. 위 지상

U동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사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303.88㎡

2층 302.42㎡

3층 302.42㎡

4층 302.42㎡

V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차고, 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

1층 130.55㎡

1층 129.37㎡

2층 193.47㎡

2층 23.25㎡. 끝.